

#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

2. 변경시행일 : 2020년 7월 15일

### 3. 변경사유

- ① 위험등급 변경 : 5등급(낮은 위험) → 4등급(보통 위험)
- ②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③ 소득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(연금과세)
-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등)
- ⑤ 기타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

### 4. 변경사항

#### 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조 (용어의 정의)</b>	이 신탁계약에서 ___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내지 7. (생략) <b>8. "예탁결제원"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.</b> 9. (생략)	이 신탁계약에서 ___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내지 7. (현행과 같음) <b>&lt;삭 제&gt;</b> 8. (현행과 같음)
<b>제9조 (수익권의 분 할)</b>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<b>표시</b> 한다. ② (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<b>발행</b>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<b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 등록)</b>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<b>수익증권 발행가액</b> 전액이 납입된 경우 ___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내지 14. (생략) ② 내지 ④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<b>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</b> 전액이 납입된 경우 ___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내지 14. (현행과 같음) ②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
<b>제14조 (수익자명부)</b>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<b>예탁결제원</b> 에 위탁하여야 한다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<b>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</b> 에 따

	<p>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b>예탁결제원</b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b>예탁결제원</b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b>예탁결제원</b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b>예탁결제원</b>은 ___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내지 2.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b>예탁결제원</b>은 ___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<b>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</b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b>전자등록기관</b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b>전자등록기관</b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b>전자등록기관</b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b>전자등록기관</b>은 ___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b>전자등록기관</b>은 ___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0조</b>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___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___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내지 ④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___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___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5조</b> (상환금 등의 지급)</p>	<p>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___ <b>예탁결제원</b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___ <b>전자등록기관</b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44조</b>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 내지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관련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,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외의 사유(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)로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</p>

		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손실보상액 또는 손해배상액은 이 투자신탁재산의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<b>제45조 (투자신탁의 해지)</b>	① 내지 ② (생략)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___ 공고하거나 <b>예탁결제원</b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___ 공고하거나 <b>전자등록기관</b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
<b>제49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	① 내지 ⑧ (생략) 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___ 판매회사 또는 <b>예탁결제원</b> 을 통하여 <b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</b>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① 내지 ⑧ (현행과 같음) 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___ 판매회사 또는 <b>전자등록기관</b> 을 통하여 <b>직접 또는 전자우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)의 방법</b>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<b>부칙</b>	<b>&lt;신 설&gt;</b>	<b>이 신탁계약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b>

**나. 투자설명서**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b>&lt;추 가&gt;</b>	<b>2020-07-15</b> - 위험등급 변경 : 5등급(낮은 위험) → 4등급(보통 위험) - 신탁계약 변경 :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등)
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-	<b>(업데이트)</b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___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___ 운용합니다.	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___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

		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___ 운용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5등급(낮은 위험)	4등급(보통 위험)
	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<b>4.68%</b>	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<b>6.49%</b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]	<b>납입요건</b>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<b>납입요건</b>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"전환 금액"이라 함) 한도
	<b>세액공제</b>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 <b>&lt;추 가&gt;</b>  - 단, 해당과세기간에 ___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-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	<b>세액공제</b>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 <b>단,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</b>  - 해당과세기간에 ___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(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

	<b>&lt;추 가&gt;</b>	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) 중 적은 금액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	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 <b>&lt;추 가&gt;</b>  - 해당 과세기간에 ___ 금액의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	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지방소득세 포함) <b>다만, 2020년 1월 1일 납입한 금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</b>  - 해당 과세기간에 ___ 금액의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<b>(업데이트)</b>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-	<b>(업데이트)</b>
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(가) 수익자총회의 소집	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b>한국예탁결제원</b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b>한국예탁결제원</b> 은 수익자총회의 ___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	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b>전자등록기관</b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b>전자등록기관</b> 은 수익자총회의 ___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
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</p>	<p>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___ 공시하거나 <b>한국예탁결제원</b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___ 공시하거나 <b>전자등록기관</b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(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___ 판매회사 또는 <b>한국예탁결제원</b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(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___ 판매회사 또는 <b>전자등록기관</b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	<p>집합투자자산을 ___ 판매회사 또는 <b>한국예탁결제원</b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, (이하 생략)</p>	<p>집합투자자산을 ___ 판매회사 또는 <b>전자등록기관</b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,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
끝.